

인도의 소비자보호법안

김 성 천 ▶ 한국소비자원 선임연구위원, 법학박사

I. 서론 - 인도의 혁신법제로서 소비자보호법

II. 2015년 소비자보호법안의 주요 개정 내용

1. 개요
2. 주요 개정 내용

III. 2016년 하원 소비자보호법안 보고서의 주요 건의 내용

1. 연혁
2. 주요 건의 내용

IV. 결어 - 시사점 및 전망

‘글로벌(Glocal)’은 글로벌(global)과 로컬(local)의 합성어로서, 교통, 통신수단 등의 발달로 생활권의 글로벌화되어 경제문제를 비롯한 환경문제, 평화문제 등에서는 국가간 상호의존이 높아지면서도 국가를 대신하는 단위로서의 지역의 역할이 여전히 강조됨을 의미합니다. 이에 최신외국법제정보는 글로벌과 로컬의 주요 현안들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찾고자 합니다.

I. 서론 - 인도의 혁신법제로서 소비자보호법

인도의 소비자보호법(Consumer Protection Act, 1986)(이하 ‘현행 소비자보호법’ 또는 ‘법’이라 함)¹⁾은 보통법·무슬림법·관습법 혼합법체계(Mixed Systems of Common Law, Muslim Law and Customary Law)²⁾에서 새로운 법문화의 진화를 보여준 혁신법제(Legal Revolution)이다.³⁾ 인도소비자에게 ‘저렴하고 간결하며 신속한(cheap, simple and quick)’ 정의(justice)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소비자보호법은 가난한 소비자(Poor Consumer)를 위한 사회복지법제(Social Welfare Legislation)이기도 하다.

소비자보호법은 1986년 11월 의회를 통과하고 대통령의 승인에 의해 제정되었고, 제1장, 제2장, 제4장은 1987년 4월 15일, 제3장은 7월 1일 시행되었다. 1986년 소비자보호법은 총 4장 31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주요 특징은 소비자의 6대 권리 선언(제6조), 소비자보호심의회(Consumer Protection Councils)(제2장)은 물론 소비자법원(Consumer Court)이라고 하는 준사법기구인 소비자분쟁구제기구(Consumer Disputes Redressal Agencies)(제3장)의 설치·운영에 있다.

인도의 소비자보호법은 1991년, 1993년, 2002년 3차례 일부 개정되었지만, 인도가 21세기 이후 빠른 경제성장으로 신흥국가로 되면서 더 나은 소비자보호를 위한 과제로 소비자보호법의 개정이 요구되었다. 이에 2004년부터 소비자보호법 개정논의가 시작된 이후 2015년에 이르러 같은 해 7월 내각(Cabinet)에서 소비자보호법 전면개정안을 마련했고, 같은 해 10월 10일 하원(Lok Sabha)에 2015년 소비자보호법안(Consumer Protection Bill, 2015)(이하 ‘소비자보호법안’ 또는 ‘안’이라고 함)⁴⁾이 발의되었다. 이후 2016년 4월 하원의 식품소비자유통 상임위원회(Standing Committee on Food,

1) 현행 소비자보호법의 원문은 The Consumer Protection Act, 1986, <http://ncdre.nic.in/bare_acts/Consumer%20Protection%20Act-1986.html> or <<http://chdconsumercourt.gov.in/consumerProtectionAct1986.pdf>> 참조.

2) 혼합법체계에 관해서는 JuriGlobal- World Legal Systems, Mixed Legal Systems, <<http://www.juriglobe.ca/eng/sysjuri/classp-oli/systmixtes.php>> 참조.

3) A. Rajendra Prasad, Historical Evolution of Consumer Protection and Law in India, Journal of Texas Consumer & Commercial Law, Vol.11. No.3, Summer 2008, pp.134~135.

4) 소비자보호법안의 원문은 The Consumer Protection Bill 2015, <<http://prsindia.org/upload/media/Consumer%20Protection%20bill,%202015.pdf>> 참조.

Consumer Affairs and Public Distribution)(이하 ‘상임위원회’라고 함)는 2015년 소비자보호법안 보고서를 발표했다⁵⁾.

이하에서는 2015년 소비자보호법안의 연혁 및 주요 개정 내용은 물론 2016년 하원 소비자보호법안 보고서의 주요 건의 내용을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2015년 소비자보호법안의 시사점 및 전망을 서술한다.

II. 2015년 소비자보호법안의 주요 개정 내용

1. 개요

소비자보호법안의 시작은 더 나은 소비자보호를 위해 소비자보호법의 종합적인 개정을 고려하라는 중앙소비자보호위원회(Central Consumer Protection Council)의 권고에 따라 2014년 1월 워킹그룹이 설치되면서부터이다. 워킹그룹은 2006년 2월에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취합하여 개정의견을 제안하는 보고서를 제출했고, 이를 근거로 법무부장관(Ministry of Law and Justice)의 자문을 받아 개정안 초안을 마련했다. 이 초안은 2011년 8월 30일 내각에서 승인하고, 같은 해 12월 16일 하원에 2011년 소비자보호법(개정)안이 제안되었으며, 식품소비자유통 상임위원회가 2012년 12월 19일 보고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15대 하원이 임기만료되어 자동폐기되었다.

그 후 내각 총리는 2015년 3월 11일 2015년 소비자보호법안을 내각에 승인을 요청했고, 같은 해 5월 28일 개정안을 수정해, 같은 해 7월 15일 다시 내각에 승인을 요청했다. 최종적으로 같은 해 10월 10일 2015년 소비자보호법안을 하원에 발의했다.

5) Standing Committee on Food, Consumer Affairs and Public Distribution, The Consumer Protection Bill, 2015, Ninth Report, 2016, <<http://www.prsindia.org/uploads/media/Consumer/SCR-%20Consumer%20Protection.pdf>>.

2. 주요 개정 내용⁶⁾

(1) 개요

소비자보호법안은 제1장 총론(Preliminary), 제2장 소비자보호심의회(Consumer Protection Councils), 제3장 중앙소비자보호청(Central Consumer Protection Authority), 제4장 소비자분쟁구제기구(Consumer Dispute Redressal Agencies), 제5장 조정(Mediation), 제6장 제조물책임(Product Liability), 제7장 보칙(Miscellaneous) 등 총 7장 87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비자보호법안은 현행 소비자보호법과 비교하면 제조물책임, 규제자로서 중앙소비자보호청, 불공정계약, 대안분쟁구제시스템인 조정에 관한 내용이 신설되었고, 적용범위의 확대, 불공정거래행위의 3가지 유형 추가, 자문기구인 소비자보호심의회의 유지, 3단계 소비자분쟁구제기구의 관할금액 및 구성원 자격 변경, 처벌의 강화 등이 다른 점이다.

(2) 제조물책임 신설

소비자보호법안의 대표적인 특징은 제조물책임에 관한 제6장의 신설이다. 제6장은 제조물책임이라는 표제 아래 4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안 제72조부터 제75조까지). 현행 소비자보호법은 1993년 개정에서 결함(Defect)과 흠결(Deficiency)에 관한 정의규정을 두었는데(법 제2조 (f), (g)), 이에 추가해서 제조물책임과 다른 법률에 미치는 영향(Product liability and its effects on others laws)(안 제72조), 제조물 제조업자의 책임(안 제73조), 제조물책임소송의 면책(안 제74조), 제조물 판매업자의 책임(안 제75조) 등을 신설했다.

6) 소비자보호법안의 주요 개정 내용은 PRS Bill Summary The Consumer Protection Bill, 2015 <<http://www.prsindia.org/media/Consumer/Bill%20Summary%20-%20Consumer%20Protection%20Bill.pdf>> 참조.

첫째, 제조물의 제조(manufacture), 공사(construction), 설계(design), 공식(formula), 준비(preparation), 조립(assembly), 시험(test), 서비스(service), 경고(warning), 지시(instruction), 유통(marketing), 포장(packaging), 표시(labelling)등에서 발생하는 결함으로 인해 소비자가 입은 사망, 신체, 재산상의 손해에 대해서는 해당 제조물의 제조업자 또는 생산자가 제조물책임을 부담한다(안 제72조(1) 전단).

둘째, 제조물책임 청구인은 제조상의 결함, 설계상의 결함, 지시상의 결함, 명시적 보증에의 부적합, 제조업자, 인과관계 등 6가지의 입증책임을 부담한다(안 제73조(1)).

셋째, 손해 발생시 제조물이 오용·변질·변경된 경우에는 제조물 판매업자는 책임이 없다(안 제74조(1)). 그 밖에도 부적절한 경고나 지시의 경우 4가지 면책사유를 규정하고 있다(안 제74조(2)).

넷째, 제조물 판매업자가 책임지지 않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안 제75조(1)). 그 밖에 제조물 판매업자가 과실에 근거하여 책임지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안 제75조(2)).

(3) 불공정계약 신설

소비자보호법안은 불공정계약(Unfair Contract)에 관한 정의규정에서 과도한 보증예금, 부적절한 손해금 부과, 채무상환 시 위약금부과, 일방적인 계약해제, 동의없는 손실 이전, 불합리한 수수료 부과 등 6가지 불공정계약조항의 유형을 규정하고 있다(안 제2조(42)).

(4) 중앙소비자보호청 신설

소비자보호법안은 규제기관으로 중앙소비자보호청에 관한 제3장을 신설하고 있다. 중앙정부는 소비자의 권리의 촉진, 보호, 집행을 위해 중앙소비자보호청을 설치해야 한다(안 제11조(1)). 중앙소비자보호청은 위원장과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안 제11조(2)). 위원장과 위원은 45세 이상으로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선임된다(안 제11조(3), (4)). 위원은 5명의 직원을 통솔한다(안 제11조(5)). 위원장과 5명의 위원은 선정위원회의 추천에 따라 중앙정부가 임명하고, 임기는 5년이며 65세까지이다(안 제12조(1)).

중앙소비자보호청의 업무는 소비자권리의 보호 및 집행, 불공정거래행위의 예방, 합

법적인 광고 보장, 불공정거래행위 및 부당광고 규제 등이다(안 제15조). 중앙소비자보호법의 권한과 기능은 소비자권리침해 조사 및 개입, 검사, 국제협약 및 국제관행의 채용 권고, 소비자권리 관련 연구 수행 및 촉진, 소비자권리 인식 확산 및 촉진, 비영리 소비자단체의 권장, 조사, 리콜명령, 안전통지, 광고철회명령, 불공정계약의 무효 공표, 과태료부과, 오인광고 인지, 소비자이익을 침해하는 사업자에 대한 명령 집행, 조언, 불공정거래행위 및 소비자이익보호를 위한 규칙 및 가이드라인 제정 등이다(안 제16조(1)). 그 밖에 불공정거래행위 및 오인광고의 조사(안 제17조), 이물질이 포함된 식품의 판매, 유통 등의 금지(안 제18조), 위원장 및 위원의 해임(안 제19조), 소비자의 불만신청 및 그 처리(안 제21조), 중앙소비자보호청의 명령 미준수에 대한 처벌(안 제24조), 연간보고서 제출(안 제25조) 등이 규정되어 있다.

(5) 조정 신설

소비자보호법안은 대안적 소비자분쟁해결시스템으로 조정(Mediation)에 관한 제5장을 신설하고 있다.

주정부는 지방소비자피해구제위원회내에 지방소비자조정실(District Consumer Mediation Cell)을, 주소비자피해구제위원회내에 주소비자조정실(State Consumer Mediation Cell)을 설치해야 하고(안 제63조(1)), 중앙정부는 중앙소비자피해구제위원회내에 중앙소비자조정실(National Consumer Mediation Cell)을 설치해야 한다(안 제63조(2)). 모든 소비자조정실은 선정조정자의 목록 및 통계·보고서를 보존해야 한다(안 제63조(4)). 그 밖에 조정자의 선정(안 제64조), 조정자의 지명(안 제65조), 조정자의 공시의무(안 제66조), 임명의 취소(안 제67조), 조정의 절차(제69조), 당사자에 의한 합의의 제의(안 제70조), 합의의 기록(안 제71조) 등을 규정하고 있다.

(6)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추가

소비자보호법안은 현행 소비자보호법상 불공정거래행위 유형(법 제2조(r))에 영수증 발급 거절, 30일 이내 재화의 반환거절, 신뢰로 제공된 개인정보 공개 등 3가지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을 추가했다(안 제2조(41)).

(7) 소비자분쟁구제기구 관할금액 및 구성 변경

소비자보호법안은 현행 소비자보호법에 의해 설립된 소비자분쟁구제기구의 관할금액 및 구성을 변경했다. 지방소비자피해구제위원회, 주소소비자피해구제위원회, 중앙소비자피해구제위원회의 관할금액의 기준을 높였고, 구성원의 자격을 변경했다.

〈표 1〉 소비자피해구제위원회의 관할금액 및 구성 비교

구 분	1986년 법	2015년 법안
관할금액	지방: 25렉(lakh) 이하	지방: 50렉(lakh) 이하
	주: 25렉에서 Rs 1크로어(Crore) 사이	주: 50렉에서 Rs 10크로어(Crore) 사이
	중앙: 1크로어 이상	중앙: 10크로어 이상
구 성	지방: 현재 또는 과거 고등법원판사와 2명 위원	지방: 지방판사 또는 치안판사의 자격이 있는 위원장과 2명의 위원
	주: 현재 또는 과거 고등법원판사와 2명 위원	주: 현재 또는 과거 고등법원 판사 위원장과 2명의 위원
	중앙: 현재 또는 과거 최고법원판사와 4명 위원	중앙: 현재 또는 과거 최고법원판사 위원장과 15명 이하의 위원

(8) 처벌 강화

소비자보호법안은 현행 소비자보호법에 비해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 현행 소비자보호법은 지방·주·중앙소비자피해구제위원회의 명령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0 루피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병과할 수 있다(법 제27조).

그러나 소비자보호법안은 과태료의 상한선을 5만 루피로 했고, 중앙소비자보호청의 명령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20렉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병과할 수 있고(안 제24조(3)), 거짓식품광고출판에 대해서는 10렉 이하의 벌금에(안 제17조(2)), 이물질이 포함된 식품의 제조, 판매, 저장, 유통이나 수입에 대해서는 1렉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안 제18조(2)).

Ⅲ. 2016년 하원 소비자보호법안 보고서의 주요 건의 내용

1. 연혁

내각 소비자식품유통장관이 2015년 10월 10일 하원에 제안된 2015년 소비자보호 법안은 같은 해 10월 25일 식품소비자유통 상임위원회에 배당되었다. 상임위원회의 첫 번째 회의는 같은 해 9월 22일에 개최되었다. 상임위원회는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취합하여 2016년 4월 2015년 소비자보호법안 보고서에 개선을 건의했다.

2. 주요 건의 내용⁷⁾

(1) 개요

2016년 4월 26에 제출된 상임위원회의 보고서는 2015년 소비자보호법안의 내용 중 오인광고, 제품오염, 불공정거래 행위, 중앙소비자보호청, 소비자분쟁구제기구, 제조물 책임 등에 대해 개선을 건의했다.

(2) 제조물책임

소비자보호법안은 제조물책임에 결함제조물과 함께 서비스의 흠결(Deficiency)을 규정하고 있는데, 상임위원회는 소비자보호법안에 의한 흠결이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하고, 서비스 흠결의 입증을 위한 조건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또한 소비자보호법안은 제조물 책임을 청구하기 위한 요건으로 소비자의 6가지 입증 책임을 구체화하고 있는데, 상임위원회는 6가지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책임을 청구할 수 없기 때문에 이는 소비자에게 부적절한 부담이라고 지적하고, 이 규정의 내

7) 상임위원회의 주요 건의 내용은 Standing Committee Report Summary The Consumer Protection Bill, 2015 <<http://www.prsinida.org/uploads/media/Consumer/SCR%20Summary-%20Consumer%20Protection%20Bill,%202015.pdf>> 참조.

용을 6가지 모두를 입증하는 대신에 6가지 중 하나만이라 입증해도 되도록 개정하도록 건의했다.

(3) 불공정계약

소비자보호법안은 소비자와 제조업자사이의 계약 중 6가지 특정계약조항을 포함한 불공정계약을 정의하고 있는데, 상임위원회는 계약조항이 불공정한가의 여부를 결정하는 원칙을 규정하도록 건의했다.

(4) 소비자권리

소비자보호법안은 현행 소비자보호법과 같이 6대 소비자권리를 규정하고 있는데(법제6조 및 안 제6조), 상임위원회는 소비자권리에 재화 및 용역의 품질에 근거한 계약해제권을 포함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5) 오인광고

소비자보호법안은 불공정거래행위의 정의에서 오인광고의 제시를 포함하고 있는데, 상임위원회는 오인광고에 대한 강한 처벌을 건의했다. 예를 들면 10억이나 2년의 징역 또는 병과를 제안했다. 또한 처벌규정은 광고에서 제품을 추천한 자에게도 적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6) 중앙소비자보호청

소비자보호법안은 중앙소비자보호청의 설치는 물론 소비자피해구제위원회의 설치도 규정하고 있는데, 상임위원회는 두 기관간의 기능이 중복된다고 지적하고, 중앙소비자보호청에는 판결권한이 귀속되지 않도록 건의했다.

(7) 지방소비자피해구제위원회의 관할금액

소비자보호법안은 중앙, 주, 지방 3단계의 소비자피해구제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면 금액관할을 규정하고 있는데, 상임위원회는 지방위원회의 관할금액을 1크로어로 상향하도록 건의했다.

(8) 제품의 오염

상임위원회는 지역(country)단위에 식품, 의약품, 비료, 종자 등에 관한 제품의 오염을 다루는 잘 갖추어진 시험시설을 설치하도록 건의했고, 제품오염에 대한 처벌내용으로 10억 벌금, 2년 징역 그리고 2년 자격정지 등을 건의했다.

IV. 결 어 - 시사점 및 전망

인도의 현행 소비자보호법은 물론 소비자보호법안은 인도의 혁신적인 소비자법체계로서 우리나라 소비자법 특히 소비자기본법의 개정 논의에 도움이 될 것이다. 대표적으로 현행 소비자보호법은 물론 소비자보호법안에도 지속적으로 규정된 소비자분쟁구제기구에 관한 내용은 우리나라 소비자분쟁해결체계의 정비에 중요한 비교법 정보가 된다. 소비자보호법안에 의해 설치될 중앙소비자보호청은 일본의 소비자청에 해당하는 규제기관으로 향후 우리나라의 소비자권익증진 행정체계의 정비에도 중요한 비교법 정보이다.

인도의 소비자보호법안은 2015년 10월에 하원에 제안되었고, 2016년 4월 상임위원회가 보고서를 발표했다. 상임위원회 보고서의 건의내용에 의하면 소비자보호법안은 개선의 여지가 있다. 이 중 제조물책임, 청약철회 등에 관한 내용은 개정되어야 한다. 제조물책임의 경우 소비자보호법안은 소비자에게 6가지의 입증책임을 부과하고 있는데,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조치가 필요하고, 향후 관련 규정이 수정되어야 한다. 청약철회의 경우 소비자보호법안은 간접적으로 불공정거래행위의 한 유형에서 30일 청약철회기간을 규정하고 있는데,⁸⁾ 청약철회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신설해야 할 것이다.

- 8) 간접적인 청약철회기간 강제의 비판에 대해서는 Akhileshwar Pathak, 'Cooling-off' and the Consumer Protection Bill, 2015: Drawing from the European Union Consumer Directive, Vikalpa The Jorunal for Decision Makers, Vol.41 No.1, p.1~8 참조.

참고문헌

- A. Rajendra Prasad, Historical Evolution of Consumer Protection and Law in India, Journal of Texas Consumer & Commercial Law, Vol.11. No.3, Summer 2008, <http://www.jtexconsumerlaw.com/V11N3/JCCL_India.pdf>.
- Akhileshwar Pathak, 'Cooling-off' and the Consumer Protection Bill, 2015: Drawing from the European Union Consumer Directive, Vikalpa The Jorunal for Decision Makers, Vol.41 No.1.
- JuriGlobal- World LEgal Systems, Mixed Legal Systems, <<http://www.juriglobe.ca/eng/sysjuri/classpoli/sysmixtes.php>>.
- PRS Bill Summary The Consumer Protection Bill, 2015 <<http://www.prsindia.org/media/Consumer/Bill%20Summary%20-%20Consumer%20Protection%20Bill.pdf>>.
- Standing Committee Report Summary The Consumer Protection Bill, 2015 <<http://www.prsinida.org/uploads/media/Consumer/SCR%20Summary-%20Consumer%20Protection%20Bill,%202015.pdf>>.
- Standing Committee on Food, Consumer Affairs and Public Distribution, The Consumer Protection Bill, 2015, Ninth Report, 2016, <<http://www.prsindia.org/uploads/media/Consumer/SCR-%20Consumer%20Protection.pdf>>.
- The Consumer Protection Act, 1986, <http://ncdre.nic.in/bare_acts/Consumer%20Protection%20Act-1986.html> or <<http://chdconsumercourt.gov.in/consumerProtectionAct1986.pdf>>.
- The Consumer Protection Bill 2015, <<http://prsindia.org.upload/media/Consumer%20Protection%20bill,%202015.pdf>>.

